

## 첨부자료 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유권해석

(의료자원정책과, '12. 10. 2.)

질의내용	답변
Q1. 현재 과거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은 이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수 없다고 한다던데.	A1. 이번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2년 8월 2일 이후에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에 확정된 자는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Q2. 간호조무사가 성범죄 경력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수 없나요?	A2. 의료기관 취업 금지 대상자는 의료인에만 해당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취업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분류됩니다.
Q3.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고용할 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A3.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을 고용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당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의 확인 절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호서식(성범죄경력 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2호서식(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해당 의료인에게 작성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Q4.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경	A4.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고용하